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을 검사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배터리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도 검사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만을 위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정비 신기술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 1) 전기자동차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 일부 검사만 도입 시행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활용한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까지 검사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나.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안 제135조의2, 별표 26의3 신설)

- 1)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로 이에 대한 정비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존 정비기술인력이 전기차 등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정비업 등록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별표 21의2)

- 1) 현행 정비업 등록기준은 전기자동차 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배출가스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연차 정비에만 필요한 시설·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비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라. 자동차검사 장면 영상촬영 방법 구체화 등(안 제80조의3, 제133조)

- 1) 자동차검사장면 촬영시 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방법을 구체화하고, 표준 정비시간 게시물 크기를 표준규격종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전기·전자장치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제80조의3제2항 중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를 “전체를 촬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 진입 시에, 뒷면은 검사진로 진출 시에 각각 촬영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검사장면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

제1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제133조제5항제2호 본문 중 “80센티미터”를 “75센티미터”로 한다.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정비책임자의 교육) ①정비업자는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비책임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정비책임자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정비책임자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정비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

다.

④정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별 교육 과목, 시간,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정비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26의3과 같다.

별표 15 제1호나목7) 중 “**경우**”를 “**경우(이 경우 전자장치진단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비율은 일일 검사대수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절연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MΩ 이상일 것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아)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
--	---	---

	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설치여부 확인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여부를 확인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별표 15 제2호나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	--	------------------

	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절연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있을 것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MΩ 이상일 것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아)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설치여부 확인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DTC)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여부를 확인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별표 21의2 제2호주)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주)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6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3] < 신 설 >

교육기관 시설기준 및 교육과목(제135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강의실(m ²)	실습실(m ²)	전임강사	교육업무담당직원
100m ² 이상	100m ²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주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의자·탁자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임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비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정비업 운영	20시간 이상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다. 고객관리, 안전관리 등 정비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동차 정비기기	5시간 이상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정비실무	10시간 이상	가. 주요장치별 정비실습 나.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다.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 정비기기	8시간 이상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다.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정비실무	6시간 이상	가.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나.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등 정비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	---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 정비기기	8시간 이상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다.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정비실무	6시간 이상	가.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나.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 정비기기	5시간 이상	가. 정비책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다. 정비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정비실무	3시간 이상	가. 고전원전기장치 취급관련 안전교육 나. 자동차 정비 관련 신기술 등 정비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주:

1. 가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정비책임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정기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제8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별표 15,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1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량	등록번호		차명(차종)	()	주행거리	km
소유자	등록연월일		점검·정비 의뢰일자			
정비 사업자	사업자등록 번호		정비업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점검·정비 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점검·정비내역				추가정비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작업내용		부품				공임
		구분	수량	단가	계	
부품		공임		소계	부가가치 세	총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 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자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D
 마. 수입부품: F
-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일련번호:

차량 소유자	등록번호		차명 (차종)		주행거리	km
	등록년월일		차대번호			
정비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정비업 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견적구분	[] 보험 [] 일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견적내용	부품내역				공임	합계
	코드	수량	단가	계		
구분(보험·일반)	부품	공임	계	부가가치세	총액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본 견적서는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3.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품을 추가 시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의뢰자는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불합니다.

4.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5.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입니다.

6.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7. 부품내역란의 코드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 D

마. 수입부품: F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략)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u>전기·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u>	16. <u>전기·전자장치</u> <u>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u> <u>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u>

17. ~ 20. (생략) ③ ~ ⑥ (생략)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 (생략)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u>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u><신설></u>	<u>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u> <u>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u> 17. ~ 2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전체를 촬영하여야 -----.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 진입 시에, 뒷면은 검사진로 진출 시에 각각 촬영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검사
장면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
위) ① (생 **략**)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
위)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
동차

③ (현행과 같음)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75센티미터 -----
-----.

-----.

⑥ (현행과 같음)

제135조의2(정비책임자의 교육)

①정비업자는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비책임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정비책임자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정비책임자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정비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정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별 교육 과목, 시간,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정비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26의3과 같다.